

『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(舊 개나리아파트)가 철거되어 「구미시 근로자임대 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「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」은,

-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(舊 개나리아파트)가 철거됨에 따라 「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,
- 기존 근로자임대아파트 거주자 전원이 '20.7월 퇴거하고 임대 아파트가 '21.6월 철거 완료되는 등 기존 조례의 존치 목적이 상실 되었으므로 「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폐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